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34 발의연월일: 2025. 1. 20.

발 의 자:이재정·박홍배·백혜련

임호선 · 복기왕 · 박희승

김한규 · 정진욱 · 김준혁

강훈식 · 강유정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 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,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여성이 출산을 하여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준하여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"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: 병역의무 이행기간
- 2. 출산을 하는 경우: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응시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출산을 한 경우로서 이법 시행 당시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	제7조(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		
제한) ① (생 략)	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「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	②		
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			
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			
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			
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			
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			
시한 후 <u>「병역법」 또는 「군</u>	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		
인사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	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		
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	분에 따른 기간은		
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			
한다.			
<u><신 설></u>	1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		
	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		
	하는 경우: 병역의무 이행기		
	<u>간</u>		
<u><신 설></u>	2. 출산을 하는 경우: 자녀 1명		
	<u>에 대하여 1년</u>		